

보도설명자료 (18.4.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자동차 CO2 배출량, 미국기준 바뀌면 한국 법도
고칠 판” (18.4.10, 중앙일보)

1. 기사내용

- ☐ 미측은 한국정부에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완화를 요구함
 - 한국정부는 규제는 그대로 두되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제도 등 각종 예외조항을 허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규제를 완화하기로 함
 - 향후 한국 환경부의 CO2 규제기준을 신설할 때 이미 미국이 정해놓은 기준(89g/km, 2025년)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요구
- ☐ 안전기준 관련 수입할당량을 늘릴 경우 한국 안전규정에도 구멍이 뚫린다는 점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

- ☐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서, 미국차가 한국의 환경/안전 기준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

< 환경 기준 >

- 환경기준 관련, 2016-2020년간 적용되는 현행 연비/온실가스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,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결과로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별도의 대우는 없음

- 친환경 기술 적용 시 감축분을 인정하는 에코이노베이션 제도는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이며, 미국산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
- 연비/온실가스 차기 기준(2021-2025) 설정에 있어 미국의 차기 기준을 포함한 글로벌 기준과 업계의 기술진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할 계획임

< 안전 기준 >

- 안전기준의 경우, 기존 25,000대에서 50,000대로 미국 안전 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할 예정이나,
 - 우리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시판 후 검증, 리콜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고,
 - 또한 도로안전, 인간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※ 문의 :

산업통상자원부	한미 FTA 대책과	장성길 과장(044-203-5290)
		이채원 서기관(044-203-5292)
환경부	교통환경과	이형섭 과장(044-201-6920)
		김용근 사무관(044-201-6930)
국토부	자동차정책과	박대순 과장(044-201-3835)
		고성우 사무관(044-201-3843)